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16411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16411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 27 선고 99나3694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A 담당변호사 심BA외 6인)

【피고, 상고인】 신CA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이BB)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 27. 선고 99나369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가 피고의 신용보증 아래 그 판시와 같은 변제기 및 이자약정 아래 1995. 5. 30. 소외 주식회사 EA유통에게 금 50,000,000원을, 같은

달 31. 같은 회사에게 금 49,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는데, 위 회사가 1996. 9. 16.까지의 약정이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후의 약정이자는 물론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용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신용보증약관상 이자가 약정기일에 납입되지 아니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면 2월 이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그 통지를 지체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의 집행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에는 그 장애가 초래된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은 면책되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자가 약정기일에 납입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1996. 7. 1.부터 2월 이내에 피고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1996. 11. 28. 통지한 탓으로, 위 신용보증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임DA이 같은 달 25.과 같은 달 26.에 걸쳐 그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고의 구상채권의 집행보전에 장애가 초래되었고 그 장애가 초래된 금액이 이 사건 신용보증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 309,895,805원에 이르므로 피고의 신용보증채무는 전부 면책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피고의 구상채권 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금액은 위 각 가등기(담보목적의 가등기임)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액인 금 181,500,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임DA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 금 381,651,458원에서 위 각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더라도 금 200,151,458(= 381,651,458 - 181,500,000)원의 재산 가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구상채권의 보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채무금이 위 잔존 재산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정당하고, 신용보증사고 통지 지체와 관련된 이 사건 신용보증서상의 면책규정은 위 지체로 인하여 피고의 구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 경우 그 장애가 초래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고가 면책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참조), 신용보증사고 통지 지체 중 부동산이 처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구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은 경우까지 피고의 신용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면책범위의 해석에 관한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